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I. 개요

II. 난민 관련 입법례

1.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의 주요내용
2. 2015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의 주요내용
3. 2016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I)의 주요내용

III. 시사점



「입법현안 법률정보」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정보를 수록한 입법 참고자료입니다.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dl.nanet.go.kr) 및 국회 법률도서관 홈페이지(law.nanet.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59호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2016. 12

작성자 :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법학박사)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

법률정보실

〈Keywords〉

난민협약, 난민절차법, 난민법, 외국인법, 체류법

요 약

최근 독일은 난민문제로 인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난민 포용 정책에서 ‘수정된 포용정책, 난민통합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2년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2015년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발칸반도의 전쟁으로 난민이 대거 발생한 상황에서 헌법인 “기본법(GG)” 제16a조에 따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하였고, 이로 인해 국내 여론의 악화와 테러 등 사회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을 제정한 후, 2015년과 2016년에 난민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1차 개정(2015년)에서는 주로 난민의 대거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난민신청 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거부된 자는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6년의 3월 개정에서는 기존의 “난민절차법(AsylVfG)”의 법명을 “난민법(AsylG)”으로 개정하고, 범법자의 강제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를 만들었다. 같은 해 7월에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 독일 거주를 위해 유입된 난민들을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은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난민을 선별하여 국내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였고, 난민으로 유입된 노동자는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른 대량 난민의 유입을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법적 준비로서 독일의 “난민법(AsylG)”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요약】

I. 개요	1
II. 난민 관련 입법례	5
1.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의 주요내용	5
2. 2015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의 주요내용	13
3. 2016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I)의 주요내용	18
III. 시사점	27
【부록】 2016년 난민법(AsylG) 원문 및 번역문	29

I. 개요

최근 유럽은 난민문제로 인하여 브렉시트(Brexit)와 테러 등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다¹⁾. 독일은 최근 난민에 의한 테러로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 포용정책을 고수하기로 했다²⁾. 그러나 난민 포용을 하면서도 난민 지원을 축소하고, 강제추방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병행하면서 노동시장으로의 난민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그림1: 1953년 이래 난민신청건수〉³⁾

- 1) 연합뉴스 2016. 7. 27.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6/0200000000AKR20160726003100098.HTML?from=search>
- 2) 연합뉴스 2016. 7. 29. 기사 참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001151082.HTML?input=1195m>
- 3) 독일의 대표적인 주간지 "die Welt" 2015. 7. 15. 기사 참조(원 자료 출처: 독일 연방 이민과 난민국) <http://www.welt.de/politik/deutschland/article144027299/Zahl-unerledigter-Asylantrage-mehr-als-verdoppelt.html>(2016. 9. 5. 검색)

<그림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독일은 1992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내전, 그리고 2015년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반도의 전쟁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독일의 난민정책이 변화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독일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GG, 이하 ‘GG’로 줄여씀)” 제16a조에서는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의 망명권(Asylrecht)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법률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제1항).’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법(GG)” 제16a조에 따라 독일 입법자는 “외국인법(Ausländergesetz: AuslG, 이하 ‘AuslG’로 줄여씀)”과 “체류법(Aufenthaltsgesetz: AufenthG, 이하 ‘AufenthG’로 줄여씀)”을 통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하여 왔다. “난민협약”⁴⁾이 1951년 7월 28일 체결된 이후에는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Bundesvertriebenengesetz: BVFG)⁵⁾”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이와 별도로 1992년 “난민절차법(Asylverfahrensgesetz: AsylVfG, 이하 ‘AsylVfG’로 줄여씀)”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하여 왔다⁶⁾.

4) 1951년에 체결되고, 1954년에 시행된 “제네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Genfer Flüchtlingskonvention: GFK, 이하 줄여서, ‘난민협약’으로 씀)”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국제적 보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은 1953년 5월 19일 제정되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bvfg/gesamt.pdf>

6) 안성경·윤이숙,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통권13호 (2013년 6월), 137~138쪽.

그리고 1992년의 “난민절차법(AsylVfG)”은 2015년에 일괄개정법률인 “난민절차촉진법(Asyl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을 통해 “난민법(AsylG)”으로 법명이 변경되고, 2016년 3월 개정법과 7월 개정법에 의해 다시 개정된 바 있다⁷⁾.

또한 2004년 제정된 “외국인법(AusG)”은 2015년에 개정되면서, “체류법(AufenthG)”⁸⁾으로 법명을 바꾸고, 난민을 수용하는 법을 정비하였다. 여기서 외국인 이주자를 크게 난민, 유럽연합시민, 그리고 제3국 국적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난민에 관한 법령으로는 “기본법(GG)” 제16a조, “난민협약”, “난민법(AsylG)”, “외국인법(AuslG)”, “체류법(AufenthG)” 등이다.

〈표1: 독일의 난민 관계 법령〉

법령명, 제정연도	주요내용	난민 관련 규정	비고
기본법, 1949 (GG)	독일 헌법으로서 기본권과 정치구조에 관하여 규정한 국내 최고의 법	제16a조	
난민협약, 1951 (GFK)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이유로 난민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국제적 보호 협약	전체	
난민절차법, 1992 (AsylVfG)	난민의 지위와 인정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난민협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난민규제를 위해 개정되었음.	전체	1992년의 난민절차법(AsylVfG)의 내용을 계수함.
난민법, 2015 (AsylG)			

7) 2015년 10월 20일 제정된 일괄개정법률인, “난민절차촉진법(Asyl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은 1992년 난민절차법(Asylverfahrensgesetz)을 난민법(AsylG)으로 명칭 변경한 것 이외에도 16개 이상의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8) “외국인법(AuslG)”은 2004년 7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에 “체류법(AufenthG)”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법령명, 제정연도	주요내용	난민 관련 규정	비고
외국인법, 2004 (AuslG)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난민협약에 따른 보호조치, 망명신청의 절차에 따른 신청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됨.	제25조, 제43조, 제45a조, 제91a조 등	
체류법, 2015 (AufenthG)			2004년의 외국인법(AuslG)의 내용을 계수함.

본고에서는 1992년 제정된 독일 “난민절차법(AsylVfG)”과 개정된 2015년과 2016년의 “난민법(AsylG)”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한다.

Ⅱ. 난민 관련 입법례

1.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의 주요내용

1951년 난민협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1953년에 “추방자와 난민의 문제에 관한 법률(Bundesvertriebenengesetz: BVFG)”을 제정하였다. 그 후 이와 별도로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을 제정하여,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서는 1992년의 “난민절차법(AsylVfG)”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적용대상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 제1조 제1항에서는 동 법은 “기본법(GG)” 제16a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보호를 요청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적용대상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법(AuslG)” 제51조 제1항에 언급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국가로의 강제출국 또는 기타 송환에 직면하여 보호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⁹⁾.

9) 1992년 제정 당시 “난민절차법(AsylVfG)”에서는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법(AuslG)” 제51조에 따른 외국인으로 한정하였다.

“외국인법(AuslG)” 제51조(정치적으로 박해당하는 자의 강제출국금지)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소속여부, 정치적 확신에 따라 외국인의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려는 국가에로 외국인을 강제 출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제 출국시킬 수 없다. 1. 망명권자, 2. 연방지역에서 외국난민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거나 연방지역 밖에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외국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외국인이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연방이주난민

나.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

1992년의 “난민절차법(AsylverfG)” 제2조 제1항에서는 “난민협약(1951년)”¹⁰⁾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망명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지위에 있어서 수혜를 제한할 수는 없다(제2항).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의 제3조¹¹⁾에 명시된 지역에서는 편입의 발표시점까지 망명을 인정받은 외국인은 망명권자로 간주된다(제3항). 다른 국가에서 이미 정치적 박해로부터 안전해진 외국인은 망명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제27조 제1항).

청은 “난민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망명절차에서 제1항의 요건의 존재를 확인한다. 연방이 주난민청의 결정은 “난민절차법”의 규정에 근거해서만 다룰 수 있다.

(3) 외국인이 중대한 이유에서 독일의 안전에 대하여 위협요소로 파악되거나 특별히 중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공익에 대한 위협을 야기한 경우에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인을 강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예고하고, 적절한 출국기한을 정하는 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예고서에는 외국인의 강제출국대상 국가가 표시되어야 한다.

10) 1951년 난민협약은 2개의 보편적인 난민 관련 협정의 하나이고, 나머지 협정은 1951년 협약에 대한 1967년 의정서이다. 본 협약에서 국제법상 최초로 난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렸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나 영역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난민 송환을 금지하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국제적 보호의 원칙이며 1951년 협약의 제 33조 1항에 정의되어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 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된다. 1951년 협약의 33조는 비호국 내 혹은 국경에 있는 비호신청인에게도 난민 지위가 결정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방문 2016. 10. 18. <https://www.unhcr.or.kr/html/001/001001003003.html>)

11) 통일조약 제3조(기본법의 효력발생)

합병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본 조약이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1983년 12월 21일에 공포된 법률에 의해 최종 수정되어 연방법률관보(BGBl.: Bundesgesetzblatt) 제Ⅲ부, 분류번호 100-1에 발표된 확정본으로서(연방법률관보 I 1481쪽) 브란덴부르크 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튀링엔 주 및 지금까지 효력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베를린 일부 지역에서 제4조에 의한 수정내용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한다.

외국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난민협약에 따라 여행사증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망명권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제2항).

다. 난민 신청

“난민절차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서는 난민에 대한 신속한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다. 난민신청을 위해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연방이주난민청(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이하 동법 제5조에서 정한대로, ‘연방청(Bundesamt)’이라 줄여씀)에 망명신청을 제기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전체효력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류승인을 획득하고, 구금 또는 여타 유치장, 병원, 치료시설 또는 청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되어있거나, 아직 16세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의 법정대리인이 수용소에 거주해야할 의무가 없는 경우(제14조 제2항), 외국인청(Ausländerbehörde)은 당해관청에 도달한 망명신청을 즉시 연방청(Bundesamt)에 이송해야한다(제18조 제1항). 다른 국가에서 이미 정치적 박해로부터 안전해졌음이 분명한 경우나, 다른 유럽공동체국가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된다(제18조 제2항). 외국인청 또는 주(州) 경찰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은 제14조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가장 가까운 수용소에 인도되어야 한다(제19조 제1항). 외국인청과 경찰은 외국인을 식별하여 다룬다. 외국인이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통하여 위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연방청(Bundesamt)이 다룬다(제19조 제2항).

라. 가족망명

난민의 가족결합 기회의 보장에 관한 내용은 가족망명에 관한 조항으로 “난민절차법(AsylVfG)”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망명권자의 배우자는 다음의 경우에 망명권자로 인정된다. 1. 망명권자가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국가에서 이미 결혼한 경우, 2. 배우자가 망명권자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망명신청을 제기한 경우 또는 입국직후에 망명신청을 제기한 경우, 3. 망명권자의 승인이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망명 신청시 만 2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망명권자로 인정된다.

마. 연방이주난민청(연방청)

난민신청에 대한 결정은 연방청(Bundesamt)이 관할한다. 외국인법상의 조치와 결정의 문제도 연방청(Bundesamt)이 관할한다(제5조 제1항). “외국인법(AuslG)” 제51조 제1항의 요건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망명신청에 대하여 연방청(Bundesamt)의 공무원은 해당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제2항). 연방내무부장관은 연방청장을 임명하고, 연방청장은 망명절차와 관련된 조직을 관할한다(제3항). 연방청장은 최소 500명 이상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설치해야하며, 연방청장은 각 주(州)와 협의하여 기타 외청을 설치할 수 있다(제4항). 상세한 사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행정협정을 통해 규율한다(제5항).

바. 청문(Anhörung)

외국인은 스스로 정치적 박해의 원인사실을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다른 국가에서의 거주지, 여행경로 및 체류에 관한 사항도 필수적 사항이며, 다른 국가에서 망명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중요 사항이다(제25조 제1항). 수용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망명신청이 제기된 후 상당 기간 안에 청문이 이루어져야한다(제4항). 청문은 비공개로 한다(제7항).

사. 강제출국

연방청(Bundesamt)은 외국인이 망명권자로 승인받지 못하고 체류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법(AuslG)” 제50조 및 제51조 제4항에 따라 강제출국예고를 발한다(제34조). 부적합한 망명신청의 경우, 연방청(Bundesamt)은 외국인에게 박해로부터 안전한 국가(sicherer Herkunftsstaat)로의 강제출국을 예고하고, 예고서에는 외국인이 입국한 바 있는 “난민협약”이 적용되는 유럽의 각국으로 강제 출국될 수 있음을 알려야한다(제35조). 연방청(Bundesamt)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외국인청에 집행 가능한 강제출국 예고를 통지하고 지체 없이 강제출국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해야한다(제40조).

아. 수용쿼터

각 주(州)는 망명신청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용소를 설치하고 수용의무를 부담하며, 수용쿼터에 따라 매월 망명신청자를 고려하여 필요한 수의 수용시설을 마련해야한다(제44조 제1항). 연방내무부장관은 매월 각 주에 망명신청자의 수, 장래의 상황 및 수용시설에 대한 수요를 통지한다(제2항). 각 주는 망명신청자의 수용에 대한 지침(Königsteiner Schlüssel)을 주(州)협정을 통해서 정한다¹²⁾.

자. 수용소

수용소는 제45조에 따라 수용 쿼터의 범위 안에서 수용하며, 상급연방청(Bundesamt)의 대외청이 외국인의 망명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12) 1992년 주별 백분율은 아래와 같다(제45조).

바덴-뷔르템베르크	12.2 %
바이에른	14.0 %
베를린	2.2 %
브란덴부르크	3.5 %
브레멘	1.0 %
함부르크	2.6 %
헤센	7.4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2.7 %
니더작센	9.3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2.4 %
라인란트-팔쯔	4.7 %
자아란트	1.4 %
작센	6.5 %
잘센-안할트	4.0 %
실레스비히-홀스타인	2.8 %
튀링엔	3.3 %

수용소가 외국인의 수용을 담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방내무부장관이 정한 망명자배치본부가 수용소의 요청에 따라 당해 수용소를 외국인의 수용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지정한다(제46조). 연방청(Bundesamt)의 대외청에 망명을 신청한 자는 6주(최대 3개월)까지 수용을 관할하는 수용소에 거주할 의무가 있다(제47조 제1항). 미성년인 미혼자녀의 부모에게 수용소에 거주할 의무가 부과된 경우, 그의 자녀도 망명신청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수용소에 거주할 수 있다(제2항). 수용소에 거주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외국인은 관할관청, 법원과 연락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제3항). 수용소에서의 거주 의무는 3개월이 도래하면 종료된다. 외국인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숙소에 거주지를 마련한 경우, 외국인을 망명권자로 인정한 결정에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 외국인에게 체류승인이 발부된 경우에도 거주 의무가 소멸된다(제48조). 또한 수용소에서의 거주 의무는 강제추방예고가 집행 불가능하고 강제추방이 당분간 불가능한 경우 종료된다. 또한 공공보건상의 이유, 공공안전, 질서 또는 여타 불가피한 이유에 기하여 그러한 의무는 종료될 수 있다(제49조).

차. 체류권과 취업권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망명신청절차의 수행을 위해 독일 내의 체류가 허가된다. 그러나 외국인은 특정한 주(州) 또는 지역에 체류를 요구할 수 없다(제55조 제1항). 또한 수용소에 거주할 의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취업활동도 할 수 없다(제61조). 수용소 또는 공동피난

소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X레이를 포함하여 전염병에 관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한다. 진단의 결과는 수용을 관할하는 관청에 전달된다(제32조). 외국인이 체류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망명을 신청한 후에 인적사항과 사진을 첨부한 체류동의서가 발부된다(제63조). 외국인이 망명권자로 인정되면 체류허가증이 발급된다(제68조).

카. 법적절차

난민 관련 법적 결정에 대한 소는 결정의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하며, 원고는 이유제시에 필요한 사실과 증명수단을 결정의 송달 후 1주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제74조). 법원은 구두변론종결시점에서의 사실과 법률 적용을 확정한다(제77조). 동 법에 따른 판결에서 소가 명백히 허용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다시 다룰 수 없다(제78조).

타. 처벌 및 벌금

망명권자지위의 승인을 목적으로 존재확인을 가능하게 하기위하여 연방청(Bundesamt) 또는 법원의 절차에서 부당한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도록 외국인을 사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84조). 체류지의 제한을 위반한 외국인은 질서위반죄로 처벌한다(제86조).

2. 2015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의 주요내용

독일 난민 관련 법의 개정을 촉진시킨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국제정세 변화로 유럽으로 대거 유입된 난민의 수적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고자 2015년 난민 관련 법 개정¹³⁾을 통해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을 “난민법(AsylG)”으로 법명을 변경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⁴⁾.

가. 난민신청자의 신고증명의 강화

“난민법(AsylG)” 또는 “체류법(AufenthG)”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아직 난민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 신고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증명서에는 성과 이름, 출생시 성(Geburtsname), 여권사진, 출생일, 국적의 약어, 성별, 신장과 눈의 색, 발급관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주어지며, 이후 최대 3개월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63a조).

13) 일괄개정법률인 “난민절차가속화법(Asylverfahrensbeschleunigungsgesetz:AsylVfBeschlG)”은 2015년 10월 20일 제정 BGBl. I S. 1722(Nr. 40) 되어, 2015년 10월 24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14)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참조. 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luechtlinge-bundesregierung-beschliesst-neues-asylgesetz-a-1055193.html (2016. 8. 2. 검색)

나. 가족결합

16세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이동의 자유 보장 없이 연방 영토 내에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머무르는 동안 별도의 난민신청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자녀 역시 난민 신청 절차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제14a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임시수용소에 체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연방청(Bundesamt)에서 망명신청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한다(제14조 제2항 제3호).

다. 신속추방

정치적 박해나 전쟁 때문이 아닌 난민 신청자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추방되도록 하며, 또한 추방은 주정부의 권한으로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주별 난민신청자의 분포를 정하고 신규 난민자를 위해 난민캠프를 설치하도록 한다. 서부 발칸반도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은 추방이전까지 6개월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제43조 제2항).

난민법 제47조 제1a항에 따르면, ① 안정된 국가출신(제29a조)¹⁵⁾의 외국인들은 연방난민청이 난민신청을 결정할 때까지, ② 난민신청이

15) 여기서 “비교적 더 안전한 국가(sicherer Herkunftsstaat)”로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네갈, 세르비아를 분류함(부록2 참조).

제29a조에 따라 명백한 근거 없는 경우, ③ 제27a조에 따라 유럽연합 법규 혹은 국제조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타 국가에서 망명절차 집행에 관여할 경우는 난민신청을 금하도록 한다.

당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안전한 것(sicherer Herkunftsstaat)으로 판단되는 제3국(제26a조) 혹은 망명절차 집행에 관여하는 국가(제27a조)로 강제퇴거되어야 하는 경우, 연방청(Bundesamt)은 해당 조치의 시행이 확정되는 대로 해당 국가로의 강제퇴거 사항을 고지하도록 한다. 유럽연합 법규 혹은 국제조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망명절차 집행에 관여하는 국가에 망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망명신청에 대해 연방청(Bundesamt)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전 고지와 기한 설정은 필요하지 않다(제34a조 제1항).

주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해 특정 출신 국가 관련 난민신청절차를 행정법원 구역에 따라 할당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이는 소송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는 데 유용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주정부는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양도할 수도 있다(제83조 제3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주택, 음식과 의료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하여 하도록 하고, 정부는 난민지원 예산의 두 배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의 정책에 따라 난민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수당 지급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하고, 주택과 음식뿐만

아니라 난민의 건강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급부는 제공하도록 하였다(제44조).

또한 주정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주정부별로 망명청원자를 대상으로 임시수용소별 가능 수감인원(주별 비례원칙을 적용한 수감인원)¹⁶⁾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혹은 이행불능인 경우 공동학술협의회(Gemeinsamen Wissenschaftskonferenz) 사무처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전년도 세수와 주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주별 수용인원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다(제45조)¹⁷⁾.

마. 이의제기

신청절차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 ‘망명신청자(Asylbewerber)로서의 지위 인정’과 ‘난민지위(Asylberechtigung) 인정불가’에 대해 즉각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망명신청자로서 혹은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국적보유국 측에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행불가 상황에 처한 경우 혹은 무국적자로 정규 체류지가 소재해 있는 국가로 귀환 조치될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 강제적으로 박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16)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5년도 주별 할당은 다음과 같음(2016. 10. 31. 검색).
http://www.bundesversicherungsamt.de/fileadmin/redaktion/Ausgleichfonds/Koenigsteiner_Schlussel_2015.pdf

17) 독일 이민 난민청 홈페이지 참조.(2016. 6. 13. 검색)
<https://www.bamf.de/SharedDocs/Glossareintraege/DE/K/koenigsteiner-schlussel.html?view=renderHelp%5BCatalogHelp%5D&nn=1363258>

이유로 국적국 보유국으로의 귀환이 기각되거나 무국적자로서 정규 체류지가 소재해 있는 국가로의 귀환이 기각된 경우, 제2문¹⁸⁾을 적용하지 않는다(제73조 제1항). 부정확한 정보를 비롯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침묵으로 일관하고 기타의 이유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부여된 난민신청권자로의 자격인정을 기각해야 한다(제2항). 난민신청과 관련된 판결사항 송달일을 기준으로 2주 내에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제기의 소를 동 법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제74조 제1항).

바. 임시치료

제44조에 따른 수용시설 또는 제53조에 따른 공동 숙소에서 난민희망자들 진료와 관련해서 연방의사법에 따른 의사 면허 또는 직업 허가를 소지한 의사들이 충분하지 않아 난민희망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 제공이 어려울 경우, 의사자격을 갖춘 난민희망자가 진료하는 의사들을 도울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적법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90조 제1항).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허가 대상은 난민신청자로 제한하고, 치료받는 자와 치료하는 자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보장해야한다(제2항).

18) “망명신청자로서 혹은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국적보유국 측에 보호를 요청함에 있어서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행불가 상황에 처한 경우 혹은 무국적자로 정규 체류지가 소재해 있는 국가로 귀환조치될 경우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

3. 2016년 난민 관련 법 개정(Asylpaket II)의 주요내용

독일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 난민 관련 법을 대폭 개정하게 된다. 독일어로 일명 “난민패키지(Asylpaket)”라고 불리는 이러한 개정은 2016년 현재 2차까지 진행되었고, 2016년 하반기까지 연방의회에서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016년 3월의 개정은 난민의 대거 수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범법자인 외국인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범법자인 난민신청자의 난민 인정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AuswErlG) Gesetz zur erleichterten Ausweisung von straffälligen Ausländern und zum erweiterten Ausschluss der Flüchtlingsanerkennung bei straffälligen Asylbewerbern (AuswErlG)”은 총 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동 일괄개정법률에서 체류법과 난민법을 개정하였다.

2016년 7월의 개정은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독일에 거주하기 위해 유입된 난민을 수용하고, 노동시장 등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일괄개정법률인 “통합법률(IntegrationsG)”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1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었다.

1) 2016년 3월의 난민 관련 법 일괄개정

일괄개정법인 “범법자인 외국인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범법자인 난민신청자의 난민 인정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AuswErlG)”을 통해 난민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¹⁹⁾.

동 일괄개정법은 제1조 “체류법(Aufenthaltsgesetz)”의 개정, 제2조 “난민법(Asylgesetz)”의 개정, 그리고 제3조 효력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조 “난민법(Asylgesetz)”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교환

독일 연방정부는 2015년 12월 15일에 제정된 일괄개정법률인 “데이터 교환개선법(Datenaustauschverbesserungsgesetz)²⁰⁾”에서는 등록 및 거주와 망명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난민절차를

19) 난민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법률 연방관보(2016. 3. 29. 방문) http://www.bgbl.de/xaver/bgbl/text.xav?SID=&tf=xaver.component.Text_0&toctf=&qmf=&hlf=xaver.component.Hitlist_0&bk=bgbl&start=%2F%2F%5B%40node_id%3D%271115867%5D&skin=pdf&tlevel=-2&nohist=1

20) 동 법은 2016년 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함(G. v. 02.02.2016 BGBl. I S. 130). “거주지와 망명의 목적의 데이터 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률(데이터교환개선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gistrierung und des Datenaustausches zu aufenthalts- und asylrechtlichen Zwecken (Datenaustauschverbesserungsgesetz - DatAustVG)”은 Artikel 1 Änderung des Asylgesetzes(제1조 난민법의 개정) Artikel 2 Änderung des AZR-Gesetzes(제2조 외국인 중앙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 Artikel 3 Weitere Änderung des AZR-Gesetzes(제3조 외국인 중앙등록에 관한 법률의 후속 개정), Artikel 4 Änderung der AZRG-Durchführungsverordnung(제4조 외국인 중앙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Artikel 5 Weitere Änderung der AZRG-Durchführungsverordnung(제5조 외국인 중앙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개정), Artikel 5a Änderung der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Aufenthaltsverordnung und der AZRG-Durchführungsverordnung(제5a조 체류법시행령과 외국인 중앙등록에 관한 시행령 개정), Artikel 6 Änderung des Aufenthaltsgesetzes(제6조 체류법 개정), Artikel 7 Änderung der Aufenthaltsverordnung(제7조 체류법 시행령의 개정), Artikel 8 Änderung des Bundesmeldegesetzes(제8조 연방등록법의 개정), Artikel 9 Weitere Änderung des Bundesmeldegesetzes(제9조 연방등록법의 후속 개정), Artikel 10 Änderung der Ersten Bundesmeldedatenübermittlungsverordnung(제10조 연방등록데이터전송규정의 개정), Artikel 11 Änderung der Zweiten Bundesmeldedatenübermittlungsverordnung(제11조 연방등록데이터전송규정의 제2차 개정), Artikel 12 Änderung des Zehnten Buches Sozialgesetzbuch(제12조 사회법전 제10권의 개정), Artikel 13 Evaluierung(제13조 입법평가), Artikel 14 Inkrafttreten, Außerkrafttreten(제14조 효력과 경과규정)으로 구성됨.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난민법 제63a조).

나. 출신국의 구분

“난민법(AsylG)” 제29a조의 안전한 출신국(sicherer Herkunftsstaat)에 대한 규정에서 “기본법(GG)” 제16a조 제3항 제1문과 관련하여, 안전한 출신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기한 망명신청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즉시 기각시키도록 하였다. 단,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증거 내용이 국적국(Staatsangehörigkeit) 내에서 전개되는 일반상황과는 상이하여 정치적 박해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다(동조 제1항). 안전한 출신국(sicherer Herkunftsstaat)으로 판단되는 국적국이라 함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하여 별표 제II호에 명시된 국가를 말한다(동조 제2항). 즉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네갈, 세르비아 등이 이에 속한다²¹⁾.

다. 가족신청

2016년 난민 관련 법 개정 이전의 “난민법(AsylG)”에서는 가족에 대해 관대한 수용입장을 보여왔다면, 2016년 개정 이후에는 가족 구성원의 신청을 2년 동안 제한하는데, 예외로서 터키, 요르단, 레바논 난민

21) BGBl I 2008 S. 1822. 참조.

캠프의 난민은 제외하였다.

“난민법(AsylG)”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난민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였다.

1. 난민신청권자로서의 인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난민신청자와 혼인관계 혹은 동거계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난민신청자가 정치적 박해를 경험한 경우,
3. 난민신청자로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전에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입국하였거나 입국 직후 난민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난민신청자로서의 인정내용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난민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로의 지위인정에 문제가 없고 이러한 인정내용에 이의제기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한 신청절차를 거쳐 난민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동조 제2항).

라. 일할 권리 등

원칙적으로는 수용시설 내의 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당사자인 외국인에 대해서 취업활동을 금한다(제61조 제1항). 난민신청자가 안전한 출신국(sicherer Herkunftsstaat: 알바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네갈, 세르비아)으로 분류되면, 직업훈련 이후 2년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제61조 제2항)²²⁾.

마. 심각한 질병

심각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각한 질병의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심각한 질병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명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난민인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제8조 제3항)²³⁾. 임시수용소 혹은 공동 숙소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흡기관에 대한 X-레이 촬영과 전염병에 대한 의료 검진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주(州) 최고보건기관을 비롯하여 해당 기관이 지정한 타 기관은 건강검진의 시행 범위와 해당 건강검진 시행을 담당하는 의사를 정하도록 한다(제62조).

바. 신속처리절차

연방청(Bundesamt)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수용시설에 설치된 출장소에서 난민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제30a조 신설).

22) Asylpaket II: Kabinett beschließt verschärfte Flüchtlingsgesetze, SPIEGEL Online. 3. Februar 2016.

23) Der Koalitions-Kompromiss im Detail: Asylpaket II – das steht drin, Tagesschau. 25. Februar 2016.

1. 안정된 출신 국가(제29a조)의 국적 소지자,
2. 거짓 진술, 거짓 서류, 중요한 정보에 대한 침묵, 자신의 신원 또는 국적에 관한 서류를 주지 않는 것 등으로 관청을 속였던 자,
3. 신원이나 국적을 확인할 수도 있는 신원서류 또는 여행서류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제거했던 자, 또는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이런 추정이 근거 있는 경우,
4. 후속 신청서를 제출한 자,
5. 추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미 정해졌거나 임박한 결정의 집행을 단지 지연 또는 방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6. 자유, 안전, 정의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정(EU) No. 1077/2011과 회원국에서 제3국적자나 무국적자의 국제보호신청 심사를 관할하는 회원국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는 규정(EU) No. 604/2013등을 위반한 자.

2) 2016년 7월의 난민 관련 법 일괄개정

2016년 7월에는 난민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 법률인 “통합법률(IntegrationsG)²⁴⁾”을 통해 “난민법(AsylG)”을 개정하였다. 동 개정 법률은 사회법전 제3권의 개정(제1조), 사회법전 제2권의 개정(제2조), 사회법전 제12권의 개정(제3조), 난민신청자급부법의 개정

24) 일괄개정법률인 “통합법(IntegrationsG)”은 총8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2016년 7월 31일부터 적용되었다. <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ges%2FIntegrG%2Fcont%2FIntegrG%2Ehtm#FN1>(독일법령 Web DB Beck-online 검색 2016. 9. 28.)

(제4조), 체류법의 개정(제5조)²⁵⁾, 난민법의 개정(제6조), 외국인의 중앙 등록에 관한 법률의 개정(제7조), 효력과 폐기(제8조)로 구성된다. 제6조 난민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신원정보 확인의 강화

신원 정보 확인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주 관할기관 또는 그 지정 기관은 연방청(Bundesamt)에 외국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 장애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오직 관련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난민법 제8조 제1b항).

나. 난민신청의 제한

노동시장으로의 난민통합에 앞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를 심사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규정하였다. 난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① 유럽연합규칙(Verordnung (EU) Nr. 604/2013)에 따른, 무국적자 또는 제3국에서 난민신청에 거부결과를 받은 자, 혹은 유럽연합 또는 국제조약,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난민신청 절차를 완료한 적이 있는 자, ② 이미 다른 유럽연합 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 ③ 안전하게 판단되는

25) 2016년에는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독일에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일부로서 노동시장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의 통합을 위하여 난민신청자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다(체류법(AufenthG) 제60a조).

제3국의 보호를 받는 자, ④“난민법” 제27조에 따라 유럽연합회원국은 아니지만, 어느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난민 신청을 한 자, ⑤“난민법” 제 71조와 제71a조에 따라 난민절차를 이중으로 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다. 난민수용시설의 확대

기존에는 연방청장은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용시설에 대해 최소 500명의 수용규모로 정해진 지부를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개정 법률에서는 최소 1000명의 수용 규모로 각 주(州)에 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난민의 수적 팽창으로 인한 대응으로서 두 배 이상의 수용 규모 단위를 준비하도록 각 주에 할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 난민에 대한 청문의 제한

난민 신청자의 폭주로 인해 연방청(Bundesamt)은 난민에 대한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기관이 일시적으로 청문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관련 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체류법(AufenthG)”에 따른다. 청문은 특별한 훈련을 받은 직원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유니폼을 착용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동법 제5조 제4항²⁶⁾을 준용한다(제24조 제1a항 신설).

26) 난민법 제5조 (4) 연방청장은 관계 지부의 사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물적·인적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동일한 적용 범위 내에서 연방청장

마. 난민신청 절차의 명확성

연방청(Bundesamt)의 의결권 행사는 서면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서면으로 해당 근거 내용을 입증해야 하고, 해당 신청에 대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교시사항을 즉각 송달하도록 해야 한다.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도 반드시 서면절차를 따르도록 한다(제31조 제1항).

산하 공무원은 연방청(Bundesamt) 소속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행정협약에 별도 명시하도록 한다.

Ⅲ. 시사점

1992년 “난민절차법(AsylVfG)”의 제정과 2015년과 2016년의 전폭적인 “난민법(AsylG)” 개정작업을 통해 독일 “난민법(AsylG)”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2015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가 유럽으로의 대량 난민 유입으로 확산되면서, 과거 독일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의 대거 수용 정책을 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법률 개정을 통해 난민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난민법(AsylG)” 개정을 통해 난민의 선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난민 출신국의 구분을 두어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sicherer Herkunftsstaat)의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출신국의 구분을 두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와 코소보 등을 비교적 안전한 출신국가로 분류하여 해당 국적 난민이 제기한 난민 신청을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주별로 수용할 수 있는 쿼터를 두고, 난민의 수용의무를 분담하도록 하였다. 난민신청자의 수용지침을 협정을 통해 확정하고, 이를 매년 공고하도록 하였다.

넷째, 난민의 신원정보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였는데, 난민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장애에 대한 신상 정보를 관계 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하였다.

다섯째, 기존의 가족망명은 배우자와 만2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난민법(AsylG)”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는 물론 동거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상의 독일 “난민법(AsylG)”의 개정 내용을 살펴본 바, 최근의 난민 관련 정책 동향은 난민 구분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난민으로 유입된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독일사회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정세의 급변화로 인한 대량 난민의 유입을 대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입법적 준비로 독일의 “난민법(AsylG)”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록】 2016년 난민법(AsylG) 원문 및 번역문²⁷⁾

원 문	번 역 문
<p>Asylgesetz(AsylG)</p>	<p>난민법(AsylG)</p>
<p>§ 1 Geltungsbereich</p> <p>(1) Dieses Gesetz gilt für Ausländer, die Folgendes beantrag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Schutz vor politischer Verfolgung nach Artikel 16a Absatz 1 des Grundgesetzes oder 2. internationalen Schutz nach der Richtlinie 2011/95/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3. Dezember 2011 über Normen für die Anerkennung von Drittstaatsangehörigen oder Staatenlosen als Personen mit Anspruch auf internationalen Schutz, für einen einheitlichen Status für Flüchtlinge oder für Personen mit Anrecht auf subsidiären Schutz und für den Inhalt des zu gewährenden Schutzes(ABl. L 337 vom 20.12.2011, S. 9); der internationale Schutz im Sinne der Richtlinie 2011/95/EU umfasst den Schutz vor Verfolgung nach dem Abkommen vom 28. Juli 1951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BGBl. 1953 	<p>제1조 적용범위</p> <p>(1)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요청한 외국인에게만 적용·시행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법」 제16a조제1항에 의거하여 정치적인 박해로부터의 보호, 2. 유럽의회 지침 2011/95/EU를 비롯하여 2011년 12월 13일 부로 적용·시행된 제3국 국제 혹은 무국적자의 국제 보호 수혜자 자격 확인을 비롯하여 난민 혹은 부수적 보호 대상자의 단일 지위 및 보호 제공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한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에 준하는 국제적 보호(2011년 12월 20일 자 관보 L 337, 9페이지). 유럽연합 지침 2011/95/EU에 명시된 국제적 보호라 함은, 1951년 7월 28일부로 적용·시행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연방법률관보 제II권, 1953년, 559, 560페이지)에 준하는 박해로부터의 보호와 해당 지침에 준하는 부수적 보호를 포괄한다. 2004년 4월 29일 부로 적용·시행된 난민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여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제3국가 국민 혹은 무국적자의 지위 인정에 대한 최소

27) 이 번역문은 부분번역입니다. 전체번역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 문	번 역 문
<p>II S. 559, 560) und den subsidiären Schutz im Sinne der Richtlinie; der nach Maßgabe der Richtlinie 2004/83/EG des Rates vom 29. April 2004 über Mindestnormen für die Anerkennung und den Status von Drittstaatsangehörigen oder Staatenlosen als Flüchtlinge oder als Personen, die anderweitig internationalen Schutz benötigen, und über den Inhalt des zu gewährenden Schutzes(ABl. L 304 vom 30.9.2004, S. 12) gewährte internationale Schutz steht dem internationalen Schutz im Sinne der Richtlinie 2011/95/EU gleich; § 104 Absatz 9 des Aufenthaltsgesetzes bleibt unberührt.</p> <p>(2) Dieses Gesetz gilt nicht für heimatlose Ausländer im Sinne des Gesetzes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in der im Bundesgesetzblatt Teil III, Gliederungsnummer 243-1, veröffentlichten bereinigten Fassung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p> <p>§ 2 Rechtsstellung Asylberechtigter</p> <p>(1) Asylberechtigte genießen im Bundesgebiet die Rechtsstellung nach dem Abkommen</p>	<p>기준 및 이와 관련하여 보장받는 보호사항의 내용을 정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4/83/EC(2004년 9월 30일자 관보 L 304, 12페이지)에 준하는 국제적 보호는 유럽연합 지침 2011/95/EU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추가적으로 「체류법」 제104조 제9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p> <p>(2) 연방 영토 내에서 실향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정한 유관 법률의 적용 대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연방법률관보 제Ⅲ권에 게재됨, 구분기호 243-1).</p> <p>제2조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p> <p>(1) 난민신청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법적 지위를 누린다.</p>

원 문	번 역 문
<p>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p> <p>(2) Unberührt bleiben die Vorschriften, die den Asylberechtigten eine günstigere Rechtsstellung einräumen.</p> <p>(3) Ausländer, denen bis zum Wirksamwerden des Beitritts in dem in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Asyl gewährt worden ist, gelten als Asylberechtigte.</p>	<p>(2)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에 있어서 수혜를 허용하는 규정은 침해할 수 없다.</p> <p>(3)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편입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망명을 보장받은 외국인은 망명신청자로 간주된다.</p>
<p>§ 3 Zuerkennung der Flüchtlingseigenschaft</p> <p>(1) Ein Ausländer ist Flüchtling im Sinne des Abkommens vom 28. Juli 1951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BGBI. 1953 II S. 559, 560), wenn er sich</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us begründeter Furcht vor Verfolgung wegen seiner Rasse, Religion, Nationalität, politischen Überzeugung oder Zugehörigkeit zu einer bestimmten sozialen Gruppe 2. außerhalb des Landes(Herkunftsland) befindet,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dessen Staatsangehörigkeit er besitzt und dessen Schutz er nicht in Anspruch nehmen kann oder wegen dieser Furcht nicht in Anspruch nehmen will oder b) in dem er als Staatenloser seinen 	<p>제3조 난민 지위의 인정</p> <p>(1) 1951년 7월 28일부로 적용 시행된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혹은 특정 사회집단 내의 조직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가 있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 2. 국적국 외에 체류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국적국 소속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혹은 당사자가 느끼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b) 상주국 외에 체류 중인 무국적자로, 종전의

원 문	번 역 문
<p>vorherig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te und in das er nicht zurückkehren kann oder wegen dieser Furcht nicht zurückkehren will.</p> <p>(2) Ein Ausländer ist nicht Flüchtling nach Absatz 1, wenn aus schwerwiegenden Gründen die Annahme gerechtfertigt ist, dass 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i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ein Kriegsverbrechen oder ei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begangen hat im Sinne der internationalen Vertragswerke, die ausgearbeitet worden sind, um Bestimmungen bezüglich dieser Verbrechen zu treffen, 2. vor seiner Aufnahme als Flüchtling eine schwere nichtpolitische Straftat außerhalb des Bundesgebiets begangen hat, insbesondere eine grausame Handlung, auch wenn mit ihr vorgeblich politische Ziele verfolgt wurden, oder 3. den Zielen und Grundsätzen der Vereinten Nationen zuwidergehandelt hat. <p>Satz 1 gilt auch für Ausländer, die andere zu den darin genannten Straftaten oder Handlungen angestiftet oder sich in sonstiger Weise daran beteiligt haben.</p>	<p>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혹은 당사자가 느끼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간주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 의거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혹은 해당 범죄에 대해 규정하는 제·개정 중인 국제조약문에서 정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난민으로서의 피난국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연방 영토 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국제조약에서 정하고 있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 특히, 자칭 정치적 목적 달성이라는 미명하에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3. 국제연합의 목적과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 <p>상기에 명시된 범죄행위 혹은 위반행위를 타인에게 교사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으로 참여한 외국인의 경우 제1문을 적용하도록 한다.</p>

원 문	번 역 문
<p>(3) Ein Ausländer ist auch nicht Flüchtling nach Absatz 1, wenn er den Schutz oder Beistand einer Organisation oder einer Einrichtung der Vereinten Nationen mit Ausnahme des Hohen Kommissars der Vereinten Nationen für Flüchtlinge nach Artikel 1 Abschnitt D des Abkommens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genießt. Wird ein solcher Schutz oder Beistand nicht länger gewährt, ohne dass die Lage des Betroffenen gemäß den einschlägigen Resolutionen der Generalversammlung der Vereinten Nationen endgültig geklärt worden ist, sind die Absätze 1 und 2 anwendbar.</p> <p>(4) Einem Ausländer, der Flüchtling nach Absatz 1 ist, wird die Flüchtlingseigenschaft zuerkannt, es sei denn, er erfüllt die Voraussetzungen des § 60 Abs. 8 Satz 1 des Aufenthaltsgesetzes.</p>	<p>(3)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 제D절 제1조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외에 현재 국제연합 산하 기관 혹은 기구로부터 보호 혹은 현재 원조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 준하여 난민 지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혹은 현재 원조를 받고 있는 자의 지위에 대해서 국제연합총회가 채택한 결의안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없이 해당 보호 혹은 원조가 중단될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p> <p>(4) 제1항에 준하는 난민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체류법」 제60조제8항의1문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하도록 한다.</p>
<p>§ 14 Antragstellung</p> <p>(1) Der Asylantrag ist bei der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zu stellen, die der für die Aufnahme des Ausländers zuständigen Aufnahmeeinrichtung zugeordnet ist. Der Ausländer ist vor der Antragstellung</p>	<p>제14조 신청</p> <p>(1) 외국인을 수용하는 임시수용소에 대해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청의 지부에 망명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외국인은 망명 신청절차를 밟기 전에 서면으로 수신 확인서를 거쳐 「체류법」 제10조제3항에 준하</p>

원 문	번 역 문
<p>schriftlich und gegen Empfangsbestätigung darauf hinzuweisen, dass nach Rücknahme oder unanfechtbarer Ablehnung seines Asylantrages die Erteilung eines Aufenthaltstitels gemäß § 10 Abs. 3 des Aufenthaltsgesetzes Beschränkungen unterliegt. In Fällen des Absatzes 2 Satz 1 Nr. 2 ist der Hinweis unverzüglich nachzuholen.</p> <p>(2) Der Asylantrag ist beim Bundesamt zu stellen, wenn der Auslände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inen Aufenthaltstitel mit einer Gesamtgeltungsdauer von mehr als sechs Monaten besitzt, 2. sich in Haft oder sonstigem öffentlichem Gewahrsam, in einem Krankenhaus, einer Heil- oder Pflegeanstalt oder in einer Jugendhilfeeinrichtung befindet, oder 3. noch nicht das 16. Lebensjahr vollendet hat und sein gesetzlicher Vertreter nicht verpflichtet ist, in einer Aufnahmeeinrichtung zu wohnen. <p>Die Ausländerbehörde leitet einen bei ihr eingereichten schriftlichen Antrag unverzüglich dem Bundesamt zu.</p>	<p>는 체류자격 통보는 해당 망명신청을 철회 혹은 완전 기각시키는 경우 일부로 제한됨을 통지받는다. 제2항제1문의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통지사항을 즉각 전달받아야 한다.</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방청에서 망명신청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하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개월 이상의 전체 적용기한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2. 병원·치료소 혹은 요양시설을 비롯하여 청소년 선도기관 등에 구치되거나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구류 조치를 연도받은 경우, 3.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해당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이 임시수용소에 체류할 의무가 없는 경우 <p>외국인청은 연방청 측에 해당 외국인이 제출한 서면 신청서를 즉각 이관시킨다.</p>

원 문	번 역 문
<p>(3) Befindet sich der Ausländer in den Fällen des Absatzes 2 Satz 1 Nr. 2 i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ntersuchungshaft, 2. Strafhaft, 3. Vorbereitungshaft nach § 62 Absatz 2 des Aufenthaltsgesetzes, 4. Sicherungshaft nach § 62 Absatz 3 Satz 1 Nr. 1 des Aufenthaltsgesetzes, weil er sich nach der unerlaubten Einreise länger als einen Monat ohne Aufenthaltstitel im Bundesgebiet aufgehalten hat, 5. Sicherungshaft nach § 62 Absatz 3 Satz 1 Nr. 1a bis 5 des Aufenthaltsgesetzes, <p>steht die Asylantragstellung der Anordnung oder Aufrechterhaltung von Abschiebungshaft nicht entgegen. Dem Ausländer ist unverzüglich Gelegenheit zu geben, mit einem Rechtsbeistand seiner Wahl Verbindung aufzunehmen, es sei denn, er hat sich selbst vorher anwaltlichen Beistands versichert. Die Abschiebungshaft endet mit der Zustellung der Entscheidung des Bundesamtes, spätestens jedoch vier Wochen nach Eingang des Asylantrags beim Bundesamt, es sei denn, es wurde auf Grund von</p>	<p>(3) 제2항 제1문의 2호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명령에 기초한 망명신청 혹은 추방 전 구금은 상호간에 대립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금, 2. 구류, 3. 「체류법」 제62조 제2항에 준하는 준비구금, 4.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불법 입국을 거쳐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1개월 이상 연방 영토에 체류한 당사자에 대해 「체류법」 제62조 제3항 제1문의1호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확보구금, 5. 「체류법」 제62조 제3항 제1문의 1a호부터 5호에 준하는 확보구금. <p>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법률상의 자문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보장하도록 한다. 추방을 목적으로 하는 구류는 연방청의 의결사항이 송달됨과 동시에 종결된다. 적어도 연방청에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제출일을 기준으로 4주 이내에, 유럽연합의 유관 법규 혹은 망명절차 집행에 대한 권한을 명시한 국제조약에 대한 시행령에 준하여 타국으로 수용 혹은 재수용을 문의하거나 해당 망명신청에 대해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근거가 없음을 들어 해당 신청사항을 각하</p>

원 문	번 역 문
<p>Rechts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über die Zuständigkeit für die Durchführung von Asylverfahren ein Auf- oder Wiederaufnahmeersuchen an einen anderen Staat gerichtet oder der Asylantrag wurde als unbeachtlich oder offensichtlich unbegründet abgelehnt.</p> <p>§ 18 Aufgaben der Grenzbehörde</p> <p>(1) Ein Ausländer, der bei einer mit der polizeilichen Kontrolle des grenzüberschreitenden Verkehrs beauftragten Behörde(Grenzbehörde) um Asyl nachsucht, ist unverzüglich an die zuständige oder, sofern diese nicht bekannt ist, an die nächstgelegene Aufnahmeeinrichtung zur Meldung weiterzuleiten.</p> <p>(2) Dem Ausländer ist die Einreise zu verweigern,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er aus einem sicheren Drittstaat (§ 26a) einreist, 2. Anhaltspunkte dafür vorliegen, dass ein anderer Staat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für die Durchführung des Asylverfahrens zuständig ist 	<p>시키도록 한다.</p> <p>제18조 국경청의 역할</p> <p>(1) 국경 통과 시 경찰의 관리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관할 기관(국경청)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해당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관할 임시수용소 혹은 인근 임시수용소로 이관하도록 한다.</p> <p>(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입국 승인은 기각시켜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서 입국하려 하는 경우, 2. 망명절차 집행에 대해 준거법으로 기능하는 유럽연합 시행규정 혹은 국제 조약에 준하여 개시절차 혹은 재개시절차를 집행해야 하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

원 문	번 역 문
<p>und ein Auf- oder Wiederaufnahmeverfahren eingeleitet wird, oder</p> <p>3. er eine Gefahr für die Allgemeinheit bedeutet, weil 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wegen einer besonders schweren Straftat zu einer Freiheitsstrafe von mindestens drei Jahren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und seine Ausreise nicht länger als drei Jahre zurückliegt.</p> <p>(3) Der Ausländer ist zurückzuschieben, wenn er von der Grenzbehörde im grenznahen Raum in unmittelbarem zeitlichem Zusammenhang mit einer unerlaubten Einreise angetroffen wird und die Voraussetzungen des Absatzes 2 vorliegen.</p> <p>(4) Von der Einreiseverweigerung oder Zurückschiebung ist im Falle der Einreise aus einem sicheren Drittstaat (§ 26a) abzusehen, soweit</p> <p>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mit dem sicheren Drittstaat für die Durchführung eines Asylverfahrens zuständig ist oder</p> <p>2.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es aus</p>	<p>3.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자로 판결이 내려진 자로, 공익을 저해하는 위험인물로 간주되어 3년 이상 출국허가가 불허된 경우.</p> <p>(3) 국경 간 경계지역에 대해서 국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입국을 단행하고 제2항에 명시된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한다.</p> <p>(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서의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제26a조) 입국불허 혹은 추방조치 집행을 금하도록 한다:</p> <p>1.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 대한 망명절차 집행과 관련하여 준거법으로 기능하는 유럽연합 시행규정 혹은 국제 조약에 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이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p> <p>2. 국제법 혹은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혹은 독일연</p>

원 문	번 역 문
<p>völkerrechtlichen oder humanitären Gründen oder zur Wahrung politischer Interess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ngeordnet hat.</p> <p>(5) Die Grenzbehörde hat den Ausländer erkennungsdienstlich zu behandeln.</p> <p>§ 19 Aufgaben der Ausländerbehörde und der Polizei</p> <p>(1) Ein Ausländer, der bei einer Ausländerbehörde oder bei der Polizei eines Landes um Asyl nachsucht, ist in den Fällen des § 14 Abs. 1 unverzüglich an die zuständige oder, soweit diese nicht bekannt ist, an die nächstgelegene Aufnahmeeinrichtung zur Meldung weiterzuleiten.</p> <p>(2) Die Ausländerbehörde und die Polizei haben den Ausländer erkennungsdienstlich zu behandeln (§ 16 Abs. 1).</p> <p>(3) Ein Ausländer, der aus einem sicheren Drittstaat (§ 26a) unerlaubt eingereist ist, kann ohne vorherige Weiterleitung an eine Aufnahmeeinrichtung nach Maßgabe des § 57 Abs. 1 und 2 des Aufenthaltsgesetzes dorthin zurückgeschoben werden. In diesem Falle ordnet die Ausländerbehörde die Zurückschiebung an, sobald feststeht, dass</p>	<p>방공화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연방내무부가 명령권을 행사하는 경우.</p> <p>(5) 국경청은 해당 외국인에 대해 감별 조치를 적용 시행하도록 한다.</p> <p>제19조 연방청과 경찰의 역할</p> <p>(1) 주(州) 외국인청 혹은 경찰 측에 망명을 공식적으로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 내용을 정하지 않는 한, 관할 임시수용소 혹은 이와 관련한 인근의 임시수용소로 신고업무를 이관하도록 한다.</p> <p>(2) 해당 외국인청과 경찰 측에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해 전과기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3)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제26a조)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입국을 단행한 외국인에 대해서 임시수용소로 사전 이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체류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시행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관할 외국인청은 추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한다.</p>

원 문	번 역 문
<p>sie durchgeführt werden kann.</p> <p>(4) Vorschriften über die Festnahme oder Inhaftnahme bleiben unberührt.</p> <p>§ 22 Meldepflicht</p> <p>(1) Ein Ausländer, der den Asylantrag bei einer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zu stellen hat (§ 14 Abs. 1), hat sich in einer Aufnahmeeinrichtung persönlich zu melden. Diese nimmt ihn auf oder leitet ihn an die für seine Aufnahme zuständige Aufnahmeeinrichtung weiter; im Falle der Weiterleitung ist der Ausländer, soweit möglich, erkennungsdienstlich zu behandeln.</p> <p>(2) Die Landesregierung oder die von ihr bestimmte Stelle kann bestimmen, das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Meldung nach Absatz 1 bei einer bestimmten Aufnahmeeinrichtung erfolgen muss, 2. ein von einer Aufnahmeeinrichtung eines anderen Landes weitergeleiteter Ausländer zunächst eine bestimmte Aufnahmeeinrichtung aufsuchen muss. <p>Der Ausländer ist während seines Aufenthaltes in der nach Satz 1 bestimmten Aufnahmeeinrichtung</p>	<p>(4) 체포 혹은 구금에 대한 시행규정은 침해할 수 없다.</p> <p>제22조 신고 의무</p> <p>(1) 연방청 산하 지부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제14조 제1항), 해당 임시수용소 측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시 해당 사항을 임시수용소 측에서 직접 받아들이거나 직접적인 수용에 관여하는 해당 임시수용소 측에 이관하도록 한다. 문제가 되는 외국인을 인계할 시, 가능한 한 전과기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p> <p>(2) 주정부 혹은 주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특정의 산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명시된 신고 사항을 특정 임시수용소에서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무, 2. 다른 주(州)에 소재한 임시수용소로 인계된 외국인 측에서 특정의 임시수용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무. <p>제1문에 명시된 특정의 임시수용소에 체류하는 동안, 문제가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과 기록</p>

원 문	번 역 문
<p>erkennungsdienstlich zu behandeln. In den Fällen des § 18 Abs. 1 und des § 19 Abs. 1 ist der Ausländer an diese Aufnahmeeinrichtung weiterzuleiten.</p> <p>(3) Der Ausländer ist verpflichtet, der Weiterleitung an die für ihn zuständige Aufnahmeeinrichtung nach Absatz 1 Satz 2 oder Absatz 2 unverzüglich oder bis zu einem ihm von der Aufnahmeeinrichtung genannten Zeitpunkt zu folgen. Kommt der Ausländer der Verpflichtung nach Satz 1 vorsätzlich oder grob fahrlässig nicht nach, so gilt § 20 Abs. 2 und 3 entsprechend. Auf diese Rechtsfolgen ist der Ausländer von der Aufnahmeeinrichtung schriftlich und gegen Empfangsbestätigung hinzuweisen.</p> <p>§ 22a Übernahme zur Durchführung eines Asylverfahrens</p> <p>Ein Ausländer, der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zur Durchführung eines Asylverfahrens übernommen ist, steht einem Ausländer gleich, der um Asyl nachsucht. Der Ausländer ist verpflichtet, sich bei oder unverzüglich nach der Einreise zu der Stelle zu begeben, die vom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oder der von ihm bestimmten Stelle bezeichnet ist.</p>	<p>등을 확인하게 된다.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해당 임시수용소로 이관하도록 한다.</p> <p>(3) 문제가 되는 해당 외국인인 제1항의 2문 혹은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임시수용소에서 결정한 이관 조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혹은 해당 임시수용소가 지정한 특정 기한에 대해서는 이관조치 집행 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1문에 명시된 의무에 대해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이행을 태만히 여길 경우, 제20조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관할 임시수용소는 해당 외국인 측에 서면으로 수신확인과 동시에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p> <p>제22a조 망명절차 집행업무에 대한 인수인계</p> <p>준거법으로 기능하는 유럽연합 법규와 국제조약을 근거로 망명절차집행 사항을 인수인계 받은 외국인인 망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외국인인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해당 외국인인은 입국 시 혹은 입국 후 즉각 연방내무부 혹은 연방내무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으로 즉각 이동해야 한다.</p>

원 문	번 역 문
<p>§ 26 Familienasyl und internationaler Schutz für Familienangehörige</p> <p>(1) Der Ehegatte oder der Lebenspartner eines Asylberechtigten wird auf Antrag als Asylberechtigter anerkannt,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Anerkennung des Asylberechtigten unanfechtbar ist, 2. die Ehe oder Lebenspartnerschaft mit dem Asylberechtigten schon in dem Staat bestanden hat, in dem der Asylberechtigte politisch verfolgt wird, 3. der Ehegatte oder der Lebenspartner vor der Anerkennung des Ausländers als Asylberechtigter eingereist ist oder er den Asylantrag unverzüglich nach der Einreise gestellt hat und 4. die Anerkennung des Asylberechtigten nicht zu widerrufen oder zurückzunehmen ist. <p>(2) Ein zum Zeitpunkt seiner Asylantragstellung minderjähriges lediges Kind eines Asylberechtigten wird auf Antrag als asylberechtigt anerkannt, wenn die Anerkennung des Ausländers als Asylberechtigter unanfechtbar ist und diese Anerkennung nicht zu widerrufen oder zurückzunehmen ist.</p> <p>(3) Die Eltern eines minderjährigen ledigen</p>	<p>제26조 가족망명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p> <p>(1) 망명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받도록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난민신청권자로서의 인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망명신청자와 혼인관계 혹은 동거계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자가 정치적 박해를 경험한 경우, 3. 망명신청자로서의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전에 배우자 혹은 동거인이 입국하였거나 입국 직후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망명신청자로서의 인정내용에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거나 파기할 수 없는 경우. <p>(2) 망명신청자가 망명 신청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 외국인에 대해 망명신청자로의 지위인정에 문제가 없고 이러한 인정내용에 이의제기 하거나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 또한 신청절차를 거쳐 망명 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p> <p>(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미성년에 해당하는</p>

원 문	번 역 문
<p>Asylberechtigten oder ein anderer Erwachsener im Sinne des Artikels 2 Buchstabe j der Richtlinie 2011/95/EU werden auf Antrag als Asylberechtigte anerkannt,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e Anerkennung des Asylberechtigten unanfechtbar ist, 2. die Familie im Sinne des Artikels 2 Buchstabe j der Richtlinie 2011/95/EU schon in dem Staat bestanden hat, in dem der Asylberechtigte politisch verfolgt wird, 3. sie vor der Anerkennung des Asylberechtigten eingereist sind oder sie den Asylantrag unverzüglich nach der Einreise gestellt haben, 4. die Anerkennung des Asylberechtigten nicht zu widerrufen oder zurückzunehmen ist und 5. sie die Personensorge für den Asylberechtigten innehaben. <p>Für zum Zeitpunkt ihrer Antragstellung minderjährige ledige Geschwister des minderjährigen Asylberechtigten gilt Satz 1 Nummer 1 bis 4 entsprechend.</p> <p>(4) Die Absätze 1 bis 3 gelten nicht für Familienangehörige im Sinne dieser Absätze, die die Voraussetzungen des § 60 Absatz 8 Satz 1 des Aufenthaltsgesetzes oder des § 3 Absatz 2 erfüllen. Die Absätze 2 und</p>	<p>망명 신청권자를 자녀로 둔 부모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지침 2011/95/EU 제2조 제호에 준하는 성인에 대해서는 망명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망명신청자로서의 인정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유럽연합 지침 2011/95/EU 제2조 제호에 준하는 가족이 망명신청자가 정치적 박해를 당한 국가에 있는 경우, 3. 망명신청자로 인정받기 전에 입국했거나 입국 직후 망명 신청서를 즉각 제출한 경우, 4. 망명신청자로서의 인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거나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5. 난민신청권자 담당 관리인이 배정된 경우. <p>망명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에 해당하는 망명신청자에게 미성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제1문의 1호부터 4호 규정이 적용된다.</p> <p>(4) 제1항부터 제3항은 「체류법」 제60조 제8항의 1문 혹은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 제2항 및 제3항은 이 조항에 의거하여 망명신청자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p>

원 문	번 역 문
<p>3 gelten nicht für Kinder eines Ausländers, der selbst nach Absatz 2 oder Absatz 3 als Asylberechtigter anerkannt worden ist.</p>	<p>서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다.</p>
<p>(5) Auf Familienangehörige im Sinne der Absätze 1 bis 3 von international Schutzberechtigten sind die Absätze 1 bis 4 entsprechend anzuwenden. An die Stelle der Asylberechtigung tritt die Flüchtlingseigenschaft oder der subsidiäre Schutz. Der subsidiäre Schutz als Familienangehöriger wird nicht gewährt, wenn ein Ausschlussgrund nach § 4 Absatz 2 vorliegt.</p>	<p>(5) 국제적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제1항부터 제3항에 준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망명신청권을 대신하여 난민지위 혹은 부수적인 보호를 인정하도록 한다.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수적 보호에는 제4조 제2항에 준하는 면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장되지 않는다.</p>
<p>(6) Die Absätze 1 bis 5 sind nicht anzuwenden, wenn dem Ausländer durch den Familienangehörigen im Sinne dieser Absätze eine Verfolgung im Sinne des § 3 Absatz 1 oder ein ernsthafter Schaden im Sinne des § 4 Absatz 1 droht oder er bereits einer solchen Verfolgung ausgesetzt war oder einen solchen ernsthaften Schaden erlitten hat.</p>	<p>(6) 이 법의 범규에 대해서 제3조 제1항에 준하는 박해 혹은 제4조 제1항에 준하는 심각한 수준으로의 피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이 위협받거나 이미 이러한 박해를 제외시키거나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경험함으로써 제1항부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p>
<p>§ 26a Sichere Drittstaaten</p> <p>(1) Ein Ausländer, der aus einem Drittstaat im Sinne des Artikels 16a Abs. 2 Satz 1 des Grundgesetzes(sicherer Drittstaat) eingereist ist, kann sich nicht auf Artikel 16a Abs. 1 des</p>	<p>제26a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p> <p>(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법」 제16a조 제2항의 1문과 관련하여(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 제3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기본법」 제16a조 제1항을 근거로 내세울 수</p>

원 문	번 역 문
<p>Grundgesetzes berufen. Er wird nicht als Asylberechtigter anerkannt. Satz 1 gilt nicht, wen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r Ausländer im Zeitpunkt seiner Einreise in den sicheren Drittstaat im Besitz eines Aufenthaltstitels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war, 2.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Grund von Rechtsvorschrif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oder eines völkerrechtlichen Vertrages mit dem sicheren Drittstaat für die Durchführung des Asylverfahrens zuständig ist oder 3. der Ausländer auf Grund einer Anordnung nach § 18 Abs. 4 Nr. 2 nicht zurückgewiesen oder zurückgeschoben worden ist. <p>(2) Sichere Drittstaaten sind außer de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in Anlage I bezeichneten Staaten.</p> <p>(3) Die Bundesregierung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ohne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s ein in Anlage I bezeichneter Staat nicht mehr als sicherer Drittstaat gilt, wenn Veränderungen in den rechtlichen oder politischen Verhältnissen dieses Staates die Annahme begründen, dass die in Artikel 16a</p>	<p>없다. 해당 외국인인 망명신청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문을 적용하지 않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독일연방공화국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2.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가와 체결한 국제 조약을 비롯하여 유럽연합 법규를 준거 법으로 하여 망명절차 집행에 독일연방공화국이 관여하는 경우, 3. 행정명령을 근거로 제1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입국을 각하시킬 수 없거나 추방할 수 없는 경우. <p>(2)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이라 함은 유럽연합 회원국 외에 별표 제1호에 명시된 국가를 말한다.</p> <p>(3) 연방정부는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별표 제1호에 명시된 국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와의 법적·정치적 관계 변동을 고려했을 때 「기본법」 제16a조 제2항의 1문에 명시된 기본 요건 이행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를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의 기준 적용에서 배</p>

원 문	번 역 문
<p>Abs. 2 Satz 1 des Grundgesetzes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ntfallen sind. Die Verordnung tritt spätestens sechs Monate nach ihrem Inkrafttreten außer Kraft.</p> <p>§ 27 Anderweitige Sicherheit vor Verfolgung</p> <p>(1) Ein Ausländer, der bereits in einem sonstigen Drittstaat vor politischer Verfolgung sicher war, wird nicht als Asylberechtigter anerkannt.</p> <p>(2) Ist der Ausländer im Besitz eines von einem sicheren Drittstaat (§ 26a) oder einem sonstigen Drittstaat ausgestellten Reiseausweises nach dem Abkomme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so wird vermutet, dass er bereits in diesem Staat vor politischer Verfolgung sicher war.</p> <p>(3) Hat sich ein Ausländer in einem sonstigen Drittstaat, in dem ihm keine politische Verfolgung droht, vor der Einreise in das Bundesgebiet länger als drei Monate aufgehalten, so wird vermutet, dass er dort vor politischer Verfolgung sicher war. Das gilt nicht, wenn der Ausländer glaubhaft macht, dass eine Abschiebung in einen anderen Staat, in dem ihm politische Verfolgung droht, nicht mit hinreichender</p>	<p>제하도록 한다. 적용 배제된 달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후에 해당 시행령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p> <p>제27조 박해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기타 안전</p> <p>(1) 이미 다른 제3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안전함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난민신청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p> <p>(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제26a조) 혹은 기타 제3국으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은 해당 국가 내에서 정치적 박해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p> <p>(3)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최소 3개월 이상 정치적 박해에 대한 위협이 없는 제3국에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정치적 박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적정수준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치적 박해의 위협이 있는 타 국가로 추방되는 납득할만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전술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p>

원 문	번 역 문
<p>Sicherheit auszuschließen war.</p> <p>§ 29 Unbeachtliche Asylanträge</p> <p>(1) Ein Asylantrag ist unbeachtlich, wenn offensichtlich ist, dass der Ausländer bereits in einem sonstigen Drittstaat vor politischer Verfolgung sicher war und die Rückführung in diesen Staat oder in einen anderen Staat, in dem er vor politischer Verfolgung sicher ist, möglich ist.</p> <p>(2) Ist die Rückführung innerhalb von drei Monaten nicht möglich, ist das Asylverfahren fortzuführen. Die Ausländerbehörde hat das Bundesamt unverzüglich zu unterrichten.</p> <p>§ 29a Sicherer Herkunftsstaat</p> <p>(1) Der Asylantrag eines Ausländers aus einem Staat im Sinne des Artikels 16a Abs. 3 Satz 1 des Grundgesetzes(sicherer Herkunftsstaat) ist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abzulehnen, es sei denn, die von dem Ausländer angegebenen Tatsachen oder Beweismittel begründen die Annahme, dass ihm abweichend von der allgemeinen Lage im Herkunftsstaat politische Verfolgung droht.</p> <p>(2) Sichere Herkunftsstaaten sind die</p>	<p>제29조 고려 대상에서 배제된 망명신청</p> <p>(1) 문제가 되는 해당 외국인이 이미 제3국에서 정치적인 박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 해당 국가를 비롯하여 정치적 박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는 다른 국가로 소환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망명신청은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다.</p> <p>(2) 3개월 이내에 소환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망명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청은 연방청에 즉각 해당 사항을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p> <p>제29a조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국</p> <p>(1) 「기본법」 제16a조 제3항의 1문과 관련하여 모국(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국)에서 해당 외국인이 제기한 망명신청은 별다른 근거를 내세우지 않아도 즉각 기각시키도록 한다. 단,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증거내용이 국적국 내에서 전개되는 일반상황과는 상이하게 정치적 박해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는 경우로 제한한다.</p> <p>(2)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국이라 함은 유럽</p>

원 문	번 역 문
<p>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Union und die in Anlage II bezeichneten Staaten.</p> <p>(3) Die Bundesregierung bestimmt durch Rechtsverordnung ohne Zustimmung des Bundesrates, dass ein in Anlage II bezeichneter Staat nicht mehr als sicherer Herkunftsstaat gilt, wenn Veränderungen in den rechtlichen oder politischen Verhältnissen dieses Staates die Annahme begründen, dass die in Artikel 16a Abs. 3 Satz 1 des Grundgesetzes bezeichneten Voraussetzungen entfallen sind. Die Verordnung tritt spätestens sechs Monate nach ihrem Inkrafttreten außer Kraft.</p>	<p>연합 회원국을 비롯하여 별표 제II호에 명시된 국가를 말한다.</p> <p>(3) 연방정부는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도 별표 제II호에 명시된 국가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와의 법·정치적 관계 변동을 고려했을 때 「기본법」 제 16a조 제3항의 1문에 명시된 기본 요건 이행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국가를 더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적국의 기준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적용 배제된 월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후에 해당 시행령은 법적 효력을 잃게 된다.</p>
<p>§ 44 Schaffung und Unterhaltung von Aufnahmeeinrichtungen</p> <p>(1) Die Länder sind verpflichtet, für die Unterbringung Asylbegehrender die dazu erforderlichen Aufnahmeeinrichtungen zu schaffen und zu unterhalten sowie entsprechend ihrer Aufnahmequote die im Hinblick auf den monatlichen Zugang Asylbegehrender in den Aufnahmeeinrichtungen notwendige Zahl von Unterbringungsplätzen bereitzustellen.</p> <p>(2)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oder die von ihm bestimmte Stelle teilt den Ländern</p>	<p>제44조 임시수용소의 설치 및 운영</p> <p>(1) 주정부는 망명청원자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수용소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수용소에 대한 망명청원자의 월별 접근수요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p> <p>(2) 연방내무부 혹은 연방내무부가 정한 위임기관은 망명신청자 허용 인원 수, 임시수용소 내의</p>

원 문	번 역 문
<p>monatlich die Zahl der Zugänge von Asylbegehrenden, die voraussichtliche Entwicklung und den voraussichtlichen Bedarf an Unterbringungsplätzen mit.</p> <p>(3) § 45 des Achten Buches Sozialgesetzbuch(Artikel 1 des Gesetzes vom 26. Juni 1990, BGBl. I S. 1163) gilt nicht für Aufnahmeeinrichtungen. Träger von Aufnahmeeinrichtungen sollen sich von Personen, die in diesen Einrichtungen mit der Beaufsichtigung, Betreuung, Erziehung oder Ausbildung Minderjähriger oder mit Tätigkeiten, die in vergleichbarer Weise geeignet sind, Kontakt zu Minderjährigen aufzunehmen, betraut sind, zur Prüfung, ob sie für die aufgeführten Tätigkeiten geeignet sind, vor deren Einstellung oder Aufnahme einer dauerhaften ehrenamtlichen Tätigkeit und in regelmäßigen Abständen ein Führungszeugnis nach § 30 Absatz 5 und § 30a Absatz 1 des Bundeszentralregistergesetzes vorlegen lassen. Träger von Aufnahmeeinrichtungen dürfen für die Tätigkeiten nach Satz 2 keine Personen beschäftigen oder mit diesen Tätigkeiten ehrenamtlich betrauen, die rechtskräftig wegen einer Straftat nach den §§ 171, 174 bis 174c, 176 bis 180a, 181a, 182 bis 184g, 225, 232</p>	<p>가능한 수용인원에 대한 예상 수요 및 추세 등을 주정부측에 월별로 통보해야 한다.</p> <p>(3) 사회법전 제8권 제45조(1990년 6월 26일 부로 적용/시행된 해당 법령 제1조; 연방법률 제1권, 1163페이지)는 임시수용소에 대해 적용을 배제 하도록 한다. 수용시설 담당자는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감독, 보호, 교육 또는 연수 혹은 비교적 적합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와 접촉하는 활동을 위탁 받은 자들에게, 연방중앙등록법 제30조 5항과 제30a조 1항에 따라 이런 활동들이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되기 전이나 또는 지속적인 명예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무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수용시설 담당자는 제2문에 따른 활동을 위해, 형법 제171조, 제174조부터 제174c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80a조까지, 제181a조, 제182조부터 제184g조까지, 제225조, 제232조부터 제233a조까지, 제234조, 제235조 또는 제236조에 의해 범죄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들을 고용하거나, 이들에게 위의 활동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수용시설 담당자가 연방중앙등록법 제30조 5항과 제30a조 1항에 따라 근무평가서를 열람할 경우, 담당자는 열람상황, 근무평가서 일자, 근무평가서 해당자가 제3문에서 언급된 범죄행</p>

원 문	번 역 문
<p>bis 233a, 234, 235 oder 236 des Strafgesetzbuchs verurteilt worden sind. Nimmt der Träger einer Aufnahmeeinrichtung Einsicht in ein Führungszeugnis nach § 30 Absatz 5 und § 30a Absatz 1 des Bundeszentralregistergesetzes, so speichert er nur den Umstand der Einsichtnahme, das Datum des Führungszeugnisses und die Information, ob die das Führungszeugnis betreffende Person wegen einer in Satz 3 genannten Straftat rechtskräftig verurteilt worden ist. Der Träger einer Aufnahmeeinrichtung darf diese Daten nur verändern und nutzen, soweit dies zur Prüfung der Eignung einer Person für die in Satz 2 genannten Tätigkeiten erforderlich ist. Die Daten sind vor dem Zugriff Unbefugter zu schützen. Sie sind unverzüglich zu löschen, wenn im Anschluss an die Einsichtnahme keine Tätigkeit nach Satz 2 wahrgenommen wird. Sie sind spätestens sechs Monate nach der letztmaligen Ausübung einer in Satz 2 genannten Tätigkeit zu löschen.</p> <p>§ 45 Aufnahmequoten</p> <p>(1) Die Länder können durch Vereinbarung einen Schlüssel für die Aufnahme von Asylbegehrenden durch die einzelnen Länder(Aufnahmequote)</p>	<p>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는지 여부 등만을 저장할 수 있다. 수용시설 담당자는 열람 자료를 변경하고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열람 자료가 특정 개인이 제2문에서 언급된 활동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목적으로 요구될 경우에 한해서이다. 자료는 권한이 없는 자들의 접근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는 열람직후 제2항에 따른 활동이 없으면, 즉시 삭제되어야 한다. 자료는 제2문에서 언급된 활동이 마지막으로 있는 지, 늦어도 6개월 후에는 삭제되어야 한다.</p> <p>제45조 수감인원</p> <p>(1) 주정부는 협약을 체결하여 주정부별로 망명청원자를 대상으로 임시수용소별 가능 수감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주별 비례원칙을 적용한 수감</p>

원 문	번 역 문
<p>festlegen. Bis zum Zustandekommen dieser Vereinbarung oder bei deren Wegfall richtet sich die Aufnahmequote für das jeweilige Kalenderjahr nach dem von dem Büro der Gemeinsamen Wissenschaftskonferenz im Bundesanzeiger veröffentlichten Schlüssel, der für das vorangegangene Kalenderjahr entsprechend Steuereinnahmen und Bevölkerungszahl der Länder errechnet worden ist(Königsteiner Schlüssel).</p> <p>(2) Zwei oder mehr Länder können vereinbaren, dass Asylbegehrende, die von einem Land entsprechend seiner Aufnahmequote aufzunehmen sind, von einem anderen Land aufgenommen werden. Eine Vereinbarung nach Satz 1 sieht mindestens Angaben zum Umfang der von der Vereinbarung betroffenen Personengruppe sowie einen angemessenen Kostenausgleich vor. Die Aufnahmequote nach Absatz 1 wird durch eine solche Vereinbarung nicht berührt.</p> <p>§ 63a Bescheinigung über die Meldung als Asylsuchender</p> <p>(1) Einem Ausländer, der um Asyl nachgesucht hat und nach den Vorschriften des</p>	<p>인원). 해당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혹은 이행불능인 경우, 공동학술협의회 사무처는 연방관보에 게재된 전년도 세수와 주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주별 수용인원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코니히슈타인 기준).</p> <p>(2)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연방 주들은, 어느 한 주가 그 주의 수용비율에 따라 수용 가능한 난민 희망자를 다른 주가 수용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의에서 해당되는 난민집단의 범위에 관한 명시와 적절한 비용보상은 반드시 규정되어야 한다. 이 협의와 제1문에 따른 수용 비율은 무관하다.</p> <p>제63a조(난민신청자 신고 증명)</p> <p>(1) 보호를 요청하거나 난민법 또는 거주법 규정에 따라 감식을 받은 적이 있으나 아직 난민신청을</p>

원 문	번 역 문
<p>Asylgesetzes oder des Aufenthaltsgesetzes erkennungsdienstlich behandelt worden ist, aber noch keinen Asylantrag gestellt hat, wird unverzüglich eine Bescheinigung über die Meldung als Asylsuchender (Ankunftsnachweis) ausgestellt. Dieses Dokument enthält folgende sichtbar aufgebrachte Angaben:</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ame und Vornamen, 2. Geburtsname, 3. Lichtbild, 4. Geburtsdatum, 5. Geburtsort, 6. Abkürzung der Staatsangehörigkeit, 7. Geschlecht, 8. Größe und Augenfarbe, 9. zuständige Aufnahmeeinrichtung, 10. Seriennummer der Bescheinigung (AKN-Nummer), 11. ausstellende Behörde, 12. Ausstellungsdatum, 13. Unterschrift des Inhabers, 14. Gültigkeitsdauer, 15. Verlängerungsvermerk, 16. das Geschäftszeichen der Registerbehörde (AZR-Nummer), 17. Vermerk mit den Namen und Vornamen 	<p>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 신고 증명서(입국 확인서)가 발급된다.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에 있는 사항들이 눈에 띄게 명시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과 이름, 2. 출생 시 성, 3. 여권 사진, 4. 출생일, 5. 출생지, 6. 국적 약어, 7. 성, 8. 신장과 눈색, 9. 관할 수용시설, 10 증명서 고유번호 (AKN(난민신청자 입국 확인서)-번호), 11. 발급관청, 12. 발급일, 13. 소지자 서명, 14. 유효기간, 15. 유효기간 연장 기재, 16. 등록관청의 관리 번호 (AZR(외국인등록부)-번호), 17. 동반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의 성과 이름 기재,

원 문	번 역 문
<p>der begleitenden minderjährigen Kinder und Jugendlichen,</p> <p>18. Vermerk, dass die Angaben auf den eigenen Angaben des Inhabers beruhen,</p> <p>19. Vermerk, dass der Inhaber mit dieser Bescheinigung nicht der Pass- und Ausweispflicht genügt,</p> <p>20. maschinenlesbare Zone und</p> <p>21. Barcode.</p> <p>Die Zone für das automatische Lesen enthält die in Satz 2 Nummer 1, 4, 6, 7, 10 und 14 genannten Angaben, die Abkürzung „MED“, Prüfziffern und Leerstellen. Der automatisch erzeugte Barcode enthält die in Satz 3 genannten Angaben, eine digitale Signatur und die AZR-Nummer. Die Unterschrift durch ein Kind ist zu leisten, wenn es zum Zeitpunkt der Ausstellung des Ankunftsnachweises das zehnte Lebensjahr vollendet hat.</p> <p>(2) Die Bescheinigung nach Absatz 1 ist auf längstens sechs Monate zu befristen. Sie soll ausnahmsweise um jeweils längstens drei Monate verlängert werden, wenn</p> <p>1. dem Ausländer bis zum Ablauf der Frist nach Satz 1 oder der verlängerten Frist nach Halbsatz 1 kein Termin bei der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nach § 23 Absatz 1 genannt wurde,</p>	<p>18. 명시사항이 소지자 본인의 진술에 근거한다는 것을 기재,</p> <p>19. 증명서 소지자가 여권 소지의무와 증명서 제시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재,</p> <p>20. 기계판독용 영역 그리고,</p> <p>21. 바코드.</p> <p>자동판독용 영역에는 제2문 1, 4, 6, 7, 10, 14호에 언급된 명시 사항들, 약어 “MED”, 심사번호 그리고 빈자리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자동으로 생성된 바코드에는 제3문에서 언급된 사항들, 디지털 서명 그리고 AZR(외국인등록부)번호 등이 들어 있어야 한다. 어린이가 입국 확인서 발급 시점에 만10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서명 가능하다.</p> <p>(2) 제1항에 의해 발급된 증명서에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증명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번 최대 3개월씩 연장된다:</p> <p>1. 외국인이 제1문에 따른 기간 만료 또는 제1문 후반부에 따른 연장기간 만료 시까지, 제23조1항에 따른 연방 관청 출장소와 예약이 되지 않은 경우,</p>

원 문	번 역 문
<p>2. der dem Ausländer nach § 23 Absatz 1 genannte Termin bei der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außerhalb der Frist nach Satz 1 oder der verlängerten Frist nach Halbsatz 1 liegt oder</p> <p>3. der Ausländer den ihm genannten Termin aus Gründen, die er nicht zu vertreten hat, nicht wahrnimmt.</p> <p>(3) Zuständig für die Ausstellung, Änderung der Anschrift und Verlängerung einer Bescheinigung nach Absatz 1 ist die Aufnahmeeinrichtung, auf die der Ausländer verteilt worden ist, sofern nicht die dieser Aufnahmeeinrichtung zugeordnete Außenstelle des Bundesamtes eine erkennungsdienstliche Behandlung des Ausländers oder die Verarbeitung seiner personenbezogenen Daten vornimmt. Ist der Ausländer nicht mehr verpflichtet in der Aufnahmeeinrichtung zu wohnen, ist für die Verlängerung der Bescheinigung die Ausländerbehörde zuständig, in deren Bezirk der Ausländer sich aufzuhalten verpflichtet ist oder Wohnung zu nehmen hat; besteht eine solche Verpflichtung nicht, ist die Ausländerbehörde zuständig, in deren Bezirk sich der Ausländer tatsächlich aufhält.</p>	<p>2. 외국인이 제23조 1항에 따라 연방 관청 출장소와 한 예약일자가 제1문에 따른 기간 또는 제1문 후반부에 따른 연장기간 너머에 있는 경우 또는,</p> <p>3. 외국인이 자신이 대체될 수 없는 이유로 예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p> <p>(3) 제1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 주소 변경, 연장을 책임지는 곳은, 수용시설에 설치된 연방 관청 출장소가 외국인을 감식하거나 개인 관련 자료를 처리하지 않는 한, 해당 외국인이 할당된 수용시설이다. 외국인이 더 이상 수용시설에 거주할 의무가 없으면, 증명서 연장업무는 해당 외국인이 거주 의무가 있거나 주택이 있는 구역의 외국인 관청이 관할한다. 만일 그런 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는 구역의 외국인 관청이 증명서 연장 업무를 관할한다.</p>

원 문	번 역 문
<p>(4) Die Gültigkeit der Bescheinigung nach Absatz 1 endet mit Ablauf der Frist nach Absatz 2 Satz 1 oder der verlängerten Frist nach Absatz 2 Satz 2, mit Ausstellung der Bescheinigung über die Aufenthaltsgestattung nach § 63 oder mit dem Erlöschen der Aufenthaltsgestattung nach § 67. Bei Ausstellung der Bescheinigung über die Aufenthaltsgestattung wird die Bescheinigung nach Absatz 1 eingezogen. Zuständig für die Einziehung ist die Behörde, welche die Bescheinigung über die Aufenthaltsgestattung ausstellt.</p> <p>(5) Der Inhaber ist verpflichtet, der zuständigen Aufnahmeeinrichtung, dem Bundesamt oder der Ausländerbehörde unverzüglich</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en Ankunftsnachweis vorzulegen, wenn eine Eintragung unrichtig ist, 2. auf Verlangen den Ankunftsnachweis beim Empfang eines neuen Ankunftsnachweises oder der Aufenthaltsgestattung abzugeben, 3. den Verlust des Ankunftsnachweises anzuzeigen und im Falle des Wiederauffindens diesen vorzulegen, 4. auf Verlangen den Ankunftsnachweis abzugeben, wenn er eine einwandfre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des Nachweisinhabers nicht zulässt 	<p>(4) 제1항에 따른 증명서는 제2항 1문에 따른 기간 또는 제2항 2문에 따른 연장 기간 만료로, 제63조에 따른 거주허가 증명서 발급 혹은 제67조에 따른 거주허가 소멸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거주허가 증명서 발급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증명서는 회수된다. 회수를 관할하는 곳은 거주허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이다.</p> <p>(5) 소지자는 관할 수용시설, 연방 관청 또는 외국인 관청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가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입 내용이 맞지 않으면, 도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2. 새로 발급된 도착증명서 또는 거주허가 증명서를 수령할 때, 요청이 있을 경우 입국 확인서를 양도할 의무, 3. 입국 확인서가 분실되면 신고하고 재발견 시에는 분실 신고한 도착증명서를 제출할 의무, 4. 입국 확인서로 증명서 소지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문제가 있거나 입국 확인서가 허가 없이 변경되면, 요청 시 입국 확인서를 양도할 의무.

원 문	번 역 문
<p>oder er unerlaubt verändert worden ist.</p> <p>Anlage I(zu § 26a) (Fundstelle: BGBl I 2008 S. 1822) Norwegen Schweiz</p> <p>Anlage II(zu § 29a) (Fundstelle: BGBl I 2008 S. 1822) Albanien Bosnien und Herzegowina Ghana Kosovo Mazedonien, ehemalige jugoslawische Republik Montenegro Senegal Serbien</p>	<p>별표 제I호(제26a조 관련) (출처: 연방법률관보 제I권, 2008년, 1822페이지) 노르웨이 스위스</p> <p>별표 제II호(제29a조 관련) (출처: 연방법률관보 제I권, 2015년, 1725페이지)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가나 코소보 마케도니아,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몬테네그로 세네갈 세르비아</p>

<참고문헌>

- AusLR – Ausländerrecht. Textausgabe., 25. überarbeitete Auflage. Stand: 1. Januar 2012. Deutscher Taschenbuch-Verlag u. a., München 2012
-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BMI) (Hrsg.): Vorläufige Anwendungshinweise zum Aufenthaltsgesetz und zum Freizügigkeitsgesetz/ EU. Berlin 2. November 2007. Der „halbamtliche“ Kommentar aus dem BMI
- Günter Renner: Ausländerrecht. Aufenthaltsgesetz und Freizügigkeitsgesetz/EU, Artikel 16 a GG und Asylverfahrensgesetz sowie arbeits- und sozialrechtliche Vorschriften. Kommentar. 9. neu be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Beck, München 2011
- Hans Tremmel: Grundrecht Asyl. Die Antwort der Sozialethik. 2. Auflage. Herder, Freiburg im Breisgau 1993
- Jan Bergmann, Klaus Dienelt, Ausländerrecht : Aufenthaltsgesetz, Freizügigkeitsgesetz/EU und ARB 1/80 (Auszug), Grundrechtecharta und Artikel 16a GG, Asylgesetz : Kommentar, 11 Aufl., C.H.Beck 2016
- Jochen Oltmer: Migration und Politik in der Weimarer Republik. Vandenhoeck & Ruprecht 2005
- Karen Musalo, Jennifer Moore, Richard A. Boswell, Refugee Law and Policy, Carolina Academic Press, 2011
- Maren Möhring: Mobilität und Migration. In: Frank Bösch (Hg.): Geteilte Geschichte: Ost- und Westdeutschland 1970–2000. Vandenhoeck & Ruprecht 2015
- Paul Tiedemann, Flüchtlingsrecht : die materiellen und verfahrensrechtlichen Grundlagen, Springer 2015
- Rainer M. Hofmann (Hrsg.) ; Rainer M. Hofmann ... [et al.], Ausländerrecht : AufenthG, AsylG (AsylVfG), GG, FreizügG/EU, StAG, EU-Abkommen,

Assoziationsrecht, 2 Aufl., Nomos 2016

Reinhard Marx: Aufenthalts-, Asyl- und Flüchtlingsrecht in der anwaltlichen Praxis.

5. Aufl., Nomos 2015

고기복, “한국난민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아태공법연구 제11집(2003)

박병도, “환경난민의 법적지위”, 국제법학회논총, 제47권 제3호(2002)

박운찬, “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아태공법연구 제11집(2003)

서원상, “국제법상 ‘환경난민’에 대한 인권 기반적 접근”, 환경과 정책 제3집
(2009.11.)

안성경·윤이숙,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난
민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통권13호 (2013년 6월)

장복희, “국제난민법의 국내적 이행”, 사회과학연구 제19집(2003)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2012】

- 1 대규모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2012. 7)
- 2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2012. 8)
- 3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2012. 8)
- 4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2012. 9)
- 5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2012. 10)
- 6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2012. 10)
- 7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2012. 11)

【2013】

- 8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2013. 1)
- 9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2013. 4)
- 10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2013. 5)
- 11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2013. 6)
- 12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 징벌적 손해배상 vs 배액배상 (2013. 8)
- 13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8)
- 14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2013. 9)
- 15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2013. 10)
- 16 국회선진화법 중 안전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3. 11)
- 17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3. 12)

【2014】

- 18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2)
- 19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2)
- 20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 「특정비밀보호법」 (2014. 3)
- 21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4)
- 22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4)
- 23 카페리어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2014. 5)
- 24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2014. 5)
- 25 해양경찰초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7)
- 26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8)
- 27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2014. 8)
- 28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4. 9)
- 29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2014. 9)

「입법현안 법률정보」 발간목록

3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2014. 11)

3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4. 12)

3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2014. 12)

33 그라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4. 12)

【2015】

34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

35 일본 국선번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5. 2)

36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2)

37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3)

38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2015. 3)

39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4)

40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5)

41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2015. 5)

42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6)

43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2015. 8)

44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2015. 9)

45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9)

46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5. 11)

47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2015. 11)

48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2015. 12)

【2016】

49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2016. 2)

5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2016. 2)

51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2016. 3)

52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2016. 5)

53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2016. 6)

54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016. 6)

55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2016. 7)

56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2016. 10)

57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2016. 12)

58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2016. 12)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59호

발 행 인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편 집 인 홍정순 법률정보실장
집 필 자 안성경 법률자료조사관
발 행 처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발 행 일 2016년 12월 16일
인 쇄 동서문화사 (02-2266-8179)
발간등록번호 : 31-9720109-001325-14

〈비매품〉

발 간 등 록 번 호

31-9720109-001325-14



국회법률도서관 <http://law.nanet.go.kr>